

碩 士 學 位 論 文

初等學校 방과 후 學校政策의 評價에
관한 研究

2010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權 正 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黃 振 洙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After-School Policy in the
Elementary School

2010年 6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權 正 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黃 振 洙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After-School Policy in the
Elementary School

위 論 文 을 社 會 福 祉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10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權 正 淑

權正淑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0年 6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방과 후 학교	5
1. 방과 후 학교의 개념	5
2. 방과 후 학교의 목적	6
3.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	6
4. 방과 후 학교의 운영	7
제2절 방과 후 학교의 법적근거	13
1. 헌법	13
2. 아동복지법	14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
4. 청소년기본법	15
5. 여성발전기본법	15
6. 영유아보육법	16
제3절 선행연구 및 정책평가 준거모형	16
1. 선행연구	16
2. 정책평가 준거모형	18
제3장 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	21
제1절 독일	21
제2절 스웨덴	26
제3절 미국	32
제4절 일본	37
제5절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43

제4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제1절 할당영역	46
1. 방과 후 학교의 대상자	46
2. 방과 후 학교 할당영역의 문제점	49
3. 방과 후 학교 할당영역의 개선방안	52
제2절 대책영역	51
1.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51
2. 방과 후 학교 대책영역의 문제점	56
3. 방과 후 학교 대책영역의 개선방안	56
제3절 재정영역	58
1. 방과 후 학교의 재정지원	58
2. 방과 후 학교 재정영역의 문제점	60
3. 방과 후 학교 재정영역의 개선방안	61
제4절 전달영역	62
1. 방과 후 학교의 전달체계	62
2. 방과 후 학교 전달영역의 문제점	62
3. 방과 후 학교 전달영역의 개선방안	63
제5장 결 론	65
참 고 문 헌	67
영 문 초 록	70

표 목 차

<표 2-1> 방과 후 학교의 목표	8
<표 2-2>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유형	12
<표 2-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표준 운영프로그램	13
<표 3-1> 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	30
<표 3-2> 스웨덴의 교육법: 유아교육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복지	31
<표 3-3> 미국의 방과 후 활동의 유형	35
<표 3-4> 선진복지국가의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비교	44
<표 4-1>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이용 현황	46
<표 4-2> 방과 후 보육시설이용 현황	47
<표 4-3> 방과 후 학교이용 현황	48
<표 4-4>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이용 현황	49
<표 4-5>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52
<표 4-6> 지역아동센터의 5대 프로그램	53
<표 4-7> 방과 후 학교 강사구성 현황	54
<표 4-8>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	55
<표 4-9> 2008년 대학생 멘토링 현황	60
<표 4-10> 본 연구의 영역별 정책평가 개선방안	64

도 목 차

<그림 2-1> 지역아동센터 전국현황	9
<그림 2-2> Gilbert와 Specht 선택의 차원	20
<그림 3-1> 스웨덴의 보육행정체계	28
<그림 3-2> 스웨덴의 아동보육	29
<그림 3-3> 미국의 방과 후 행정체계	33
<그림 3-4>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 법	4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복지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하는 애프터스쿨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탁아’, ‘방과 후 아동교실’, ‘방과 후 보육’, ‘어린이 공부방’, ‘아동공부방’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근본 내용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핵가족화, 이혼증가 및 한 부모가구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 맞벌이부부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에 대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아동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영유아에 한정되었던 보육서비스를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는데 방과 후 맞벌이 부모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열쇠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와 간식들을 찾아 먹으며 부모님의 귀가를 기다리거나,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학원수업에 참가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들은 ‘열쇠아동(latchkey child)’이라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 초등학생의 자기보호 실태는 24~33%정도로 추산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연구결과인 취업주부의 자녀 중 35~40%가 방과 후 부모의 보호 없이 3~7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윤주, 2003: 10), 2004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방과 후 70%가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학원이용은 저학년의 비율보다는 고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교육적인 측면에 의한 필요성과 많은 맞벌이가구에서 아

이를 맡길 곳으로 이용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보육기능이 취약한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및 저 소득층의 자녀들의 방과 후 부적절한 영상 시청이나, 컴퓨터의 사용, 사고 및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등은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첫 아동보육정책은 김영삼 정부시절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 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단기과제로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방과 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을 개정(1996년 1월)¹⁾하였고, 저 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우리사회의 과급효과를 우려 2006년 7월 저 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²⁾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과 후 보육정책은 아동들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신체, 인지 및 정서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며,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뉘고, 재정지원별로는 국고보조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나뉘어 방과 후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인 관련법과 주관부처 없는 정책의 시행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수혜자에게 선택의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모두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가 중복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2) 새로마지플랜은 향후 방과 후 보육의 수혜율을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되고,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유사성을 띠어, 차별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보육시설로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고, 방과 후 비는 교실을 이용하여 경제적이 이득과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방과 후 보육교실로 사용은 개방에 따른 사고의 책임의 소재 및 교사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와 사회 전반의 이해부족 및 보육프로그램의 미비한 운영 등의 단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방과 후 아동보육에 필요한 지식을 기반으로 2006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각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아동복지차원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아동보육서비스에는 모두 초등학생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지도, 방과 후 서비스, 방과 후 아동보호, 방과 후 아동양육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제를 안고 있으며, 3개의 부처가 중복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기관의 목적과 배경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실태와 정책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본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와 간행물, 방과 후 교육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인터넷자료 등을 활용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탐색과 본인의 오랜 방과 후 교육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과 관련한 연구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실증연구로서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대상영역과 지원방법영역, 재원의 마련영역, 전달체계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실증적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서 발간한 통계분석자료와 사회복지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찾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방과 후 학교의 개념, 목적, 필요성, 방과 후 학교의 법적근거, 선행연구의 고찰 및 정책평가 준거모형을 구성하였다. 제3장 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에서는 복지선진국들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운영 및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할당영역, 급여영역, 재정영역, 전달체계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단일화 법안의 마련과 보건복지부의 전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의 양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예산의 마련 등의 대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현대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저 출산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 한 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장기종합전략인 국가정책과제(비전2030)의 하나로 준비되었다.

1. 방과 후 학교의 개념

방과 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보육기능을 강화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06년 이후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교실, 특기적성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 공간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보호와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게 된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과 방과 후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령기의 아동³⁾을 허가받은 정규기관에서 돌보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방과 후 학교는 반드시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자율적·통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두 방과 후 교실의 유형에 포함된다. 이는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지역사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과 후 학교는 기능적 관점에서 복지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 지역사회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금숙, 2007: 15). 복지적 관점에서 보호를 요하는

3) 학령기아동: 초등학교1학년부터 졸업하는 12세까지를 말하며, 아동기 또는 학동기라고 한다.

학령기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약화된 가족의 아동보육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의한 아동발달의 저해환경을 제거하여 모든 발달영역에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사회적 관점에서 학령기의 아동에게 지역사회의 유대감, 공동체의식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방과 후 학교의 목적

일차적인 목적은 학령기의 아동들 중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과 후 위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차적인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아동의 특기와 적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령기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초등학교 생활의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환경 등을 제공한다.

셋째, 방과 후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미래를 제공한다.

넷째, 맞벌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정서적 발달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함에 이바지 한다.

여섯째,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학교 서열화를 막는다.

3.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한 부모가정의 증가 등은 전통가족에서 핵가족화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현대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방과 후 한두 개의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기보호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가정의 보육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교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가스 및 전기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고, 강도와 성폭력 등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으며, 컴퓨터게임중독과 같은 환경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오전수업만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은 사각에 노여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모와의 대화부족 및 애정결핍에 의한 정서적 불안이나 건강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학교생활과 같은 사회적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상숙, 2008: 9).

학령기는 인간의 생을 통해서 볼 때 인성의 기초, 생활습관 및 학습습관이 형성되며,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정서발달은 인간성장 발달의 원천이고, 정서적 경험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며, 사회성발달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또래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효과적인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된다.

이와 같은 학령기의 특성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 방과 후 학교의 운영

1) 교육과학기술부(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 안으로 특기적성교육 등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제안하여 지금의 방과 후 학교 체계가 이루어졌다. 참여정부시절 ‘사교육비 경감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는 방과 후 교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의 집중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하여 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과 후 학교는 계층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방과 후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데 비전을 가진다.

2006년부터 시범운영이후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바우처(Voucher)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도시와 농·어촌과 같은 지역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⁴⁾.

<표 2-1> 방과 후 학교의 목표

비 전	정책 목표
학교 교육기능의 보완	특기, 적성, 교과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운영
사교육비의 경감	보육 등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의 실현	농, 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운영,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7),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p. 2.

2000년대 들어 저 출산·고령화현상이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자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 7월 ‘새로마지플랜2010’을 확정하여 정부는 새로마지플랜에 의해 방과 후 학교를 2010년까지 전체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과 이용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의

4) 씨앤비뉴스, 정치(2010. 03. 24)

질을 개선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참여율을 2006년 41%에서 2010년에는 65%로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장점은 학교수업종료 후 다른 시설로의 이동이 발생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안전하고, 방과 후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장시간 학교에 머물게 되는 단조로운 아동들의 학습에 권태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서로 다른 가정상황에 맞게 귀가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점,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예·체능과 특기적성에 맞는 취미활동 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컴퓨터와 음악, 미술, 과학, 영어, 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⑪항에 규정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림 2-1> 지역아동센터 전국현황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http://www.icareinfo.info/>

지역아동센터의 모태가 되는 ‘공부방’은 1985년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원봉사실천 영역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IMF

외환위기를 통해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공부방의 양적 확산이 이뤄졌다.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의 재개정으로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되어 민간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법인, 민간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고, 전국에 '09년 기준으로 3,474개의 시설이 운영되며, 전국에서 97,926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약 80% 정도가 초등학생이며, 청소년의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은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및 어린이집 내 방과 후 시설과 복지관 내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정 자녀, 맞벌이부부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된 시설에서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방과 후 아동지도 기관들은 미비한 재정적 지원, 단순한 프로그램,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에 근거한다.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은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귀가시간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가능하나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방과 후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학기간 중에는 종일제로 운영도 가능하다.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은 취학 전부터 이용한 곳으로 친숙한 환경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덜고, 아동 중심적 교육철학으로 아동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지역아동정보센터조사자료(2009년 12월 기준).

3) 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05년 9월부터 46개의 아카데미를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71개 청소년시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었으나 2010년 3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 부모가정의 방과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체험활동과 급식, 상담 등의 종합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을 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와 차별화 되는 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으로 청소년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아카데미의 운영유형은 수련시설 중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구분하며, 국가의 예산지원 형태에 의해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료+무료 혼합)으로 연중 운영(주 6일 운영, 토요일은 체험학습, 일요일 휴무)하고 있다.

<표 2-2>의 일반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대상으로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이다. 전원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참가자의 효율적인 모집을 위해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수조건으로 1개 반 모집 기준단위를 20명으로 제한하며, 수익자 부담 외 일반강사의 강

사료를 일정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표 2-2>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유형

구 분	초등(4~6학년)			중등(1~2학년)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수련시설(A형)	A-1형	A-2형	A-3형	A-4형	A-5형	A-6형
지역사회(B형)	B-1형	B-2형	B-3형	B-4형	B-5형	B-6형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 백서.

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청소년 비행노출·예방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전액무료이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대상자선발과 확인 절차를 통해 심의 확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등은 우선고려대상이 된다.

혼합형은 유료참가 청소년과 무료참가 청소년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혼합형 내의 유료참가 청소년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하고 있다.

<표 2-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표준 운영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본공통과정, 전문선택과정, 체험학습과정, 생활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별로 지역적 특성과 참여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아동이 학교수업을 마친 후부터 귀가하는 시가까지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등 타 부처 간의 유사성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화된 방과 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도심을 벗어난 지역의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전문선택과정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예가 발생되고 있다. 방과 후 아카데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확보를 통한 전문선택과정의 활성화

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표 2-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표준 운영프로그램

구 분	기본공통 과목	전문선택과정		체험학습	생활지원
		영 역	예 시(안)		
초 등 학 교	숙제, 자기주도 학습 보충심화 학습	문화, 예술	서예, 피아노	주말 체험 학습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
		스포츠	수영, 인라인 등		
		과학, 탐구	로봇, 컴퓨터 등		
		세계, 시민	언어, 문화이해 등		
		지역, 사회	리더십, 웅변 등		
중 학 교	숙제, 자기주도 학습 보충심화 학습	문화, 예술	밴드, 댄스 등	주말 체험 학습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
		스포츠	수영, 암벽등반 등		
		과학, 탐구	컴퓨터, 환경 등		
		세계, 시민	언어, 여행 등		
		지역, 사회	리더십, 사회봉사 등		

출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http://www.youthacademy.or.kr/>.

제2절 방과 후 학교의 법적근거

방과 후 학교의 법적 근거는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청소년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헌법(憲法)

우리나라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도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또한 헌법 34조 ④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아동도 국민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1961년 12월 ‘아동복지법’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3조 ①과 ②항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부모와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제2조 ①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⁶⁾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1989년 11월에 채택되어, 1990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적용되었다. 아동복지법과 같이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아동의 의견존중, 생존과 발달,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6)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이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자국 내의 모든 외국아동까지 포함한다. 또한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데 의의를 둔다.

4. 청소년기본법(靑少年基本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의 제3조 ①항에서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18세 미만의 자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②항 ‘청소년의 육성’, ③항 ‘청소년의 활동’, ④항 ‘청소년의 복지’, ⑤항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의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장소·행위 등의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발전기본법(女性發展基本法)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2월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의 제23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②항에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가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6. 영유아보육법(嬰 幼兒保育法)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1991년 1월 규정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법은 보호자는 있으나 보호자의 근로, 질병과 같은 기타사정에 의하여 보호가 어려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제27조에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생의 방과 후, 방학 중, 학교시작 전에 보호와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선행연구

1995년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시작하여 2006년 이후 시행된 방과 후 학교

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보호에 대한 연구로 방과 후 보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방과 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 인식과 지역아동센터, 기존의 특기·적성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연구는 김재인(2000)과 서영숙(2006)이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적에 관련하여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기능에 한정할 것인지 보육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의해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문제는 방과 후 학교의 대상, 방과 후 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선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선숙(1999)은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은 학습프로그램보다는 보육프로그램으로 취학 전 아동에서 학령기 아동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 보호, 보육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류방란(2004)과 정상숙(2008)의 연구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가치에 관한 연구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김명숙·정영숙(2005)의 방과 후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과 성인의 보호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보호 상태에 놓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아동보다 학교생활에서의 주도성이 부족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여러 상황이 개인차를 보인다는 점으로 성별과 더 낮은 연령, 자기보호의 기간 및 자기보호가 시작된 초반에는 더 많은 불안과 적응장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이수민(2007)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연구는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법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결론 내리고 있다. 정정순(1999)의 방과 후 아동지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사의 자질, 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과 학부모의 관계,

제도적 보완에 관하여 기술한다.

양민환(2009)의 방과 후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2%로 스웨덴의 88%, 프랑스의 73%, 독일의 91%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엄현경(2007)의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측면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와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에 의한 정부의 재원지원으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며, 교육부내에 방과 후 전담부서의 설치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의 대상아동에게 친근한 장소로 전문적인 교사로부터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이동이 없어 안전하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교사들의 업무증가와 학교 시설의 개방에 따른 문제 및 장시간 학교에서 생활에 의한 학습능률의 저하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

2. 정책평가 준거모형

본 연구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객관적인지를 확인해 주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분석 틀을 제시한 학자는 여러 사람이 있고,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Howard J. Karger & David Stoesz는 정책분석가는 주관적 가치를 수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한 분석을 해야 하며, 고려할 요인으로 ① 정책의 역사적 배경 ② 정책을 필요로 한 문제 ③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분석을 위한 요소로 ① 정책목표 ② 정책의 실현가능성 ③ 효과성 ④ 능률성을 제

시하고 있다.

Charles S. Prigmore & Charles R. Atherton는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준거틀로서 크게 네 가지 부분의 13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고려할 요인은 ① 고려하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과 일치 혹은 양립하는가? ② 그 정책은 평등과 사회정의에 기여하는가? ③ 그 정책은 사회사업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가? ④ 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둘째, 영향과 의사결정의 영역으로서 ①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성이 있는가? ② 그 정책은 합법적인가? ③ 그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셋째,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으로서 ① 그 정책은 과학적으로 올바른가? ② 그 정책은 합리적인가?

넷째, 비용과 수익에 관한 영역으로 ① 그 정책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나은가? ② 그 정책은 현실성이 있는가? ③ 그 정책은 효율적인가? ④ 그 정책은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다.

Neil Gilbert & Harry Spect의 정책평가 분석틀은 어떠한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며, 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Gilbert & Spect의 분석의 틀은 사회적 급여의 제공과 관련하여 4가지 차원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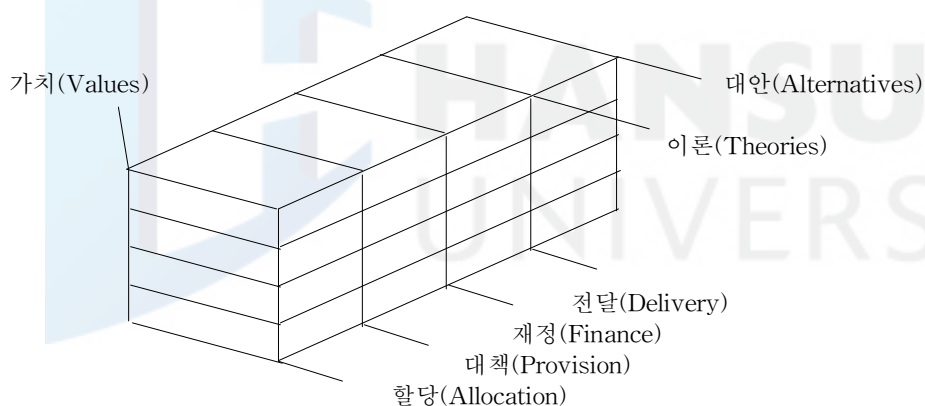
4가지 차원의 질문은 ①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기반은 무엇인가? ② 사회적 대책(Social Provision)의 형태로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③ 재원(Finance)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 ④ 사회적 급여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된다.

즉,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누가 혜택을 받는가? 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수혜자의 자격요건의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② 사회적 대책은 어떤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대책은 급여와 같은 현금이나 현물로 구분되지만 더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사회적 급여의 마련과 관련이 있다. ④ 사회적 급여의 전달을 위한 체계와 관련이 있다. 이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lbert & Spec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을 평가 및 분석하고자 한다. Gilbert & Spec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대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형들의 준거틀은 평가하기 모호한 규범적인 준거에 많이 치우쳐 있고, 제도와 정책의 평가에 한정되어 있으나, Gilbert & Spect의 분석틀은 평가가 용이한 할당, 급여, 재정, 전달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적, 규범적 준거에 의한 평가가 모두 가능하며, 정책의 평가뿐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2-2> Gilbert와 Specht 선택의 차원



출처: N. Gilbert & H..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1974.

제3장 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

우리나라에서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 현황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운영의 방향을 찾고자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독일

독일의 보육의 역사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여성노동이 증가하고, 대신 자녀를 보육해 줄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40년 프뢰벨(Friedrich Froebel)⁷⁾이 최초의 보육시설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동독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노동에 참여하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보육제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1990년 통일독일 후 청소년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동·서독의 통합된 보육법이 마련되었으나, 동·서독의 보육현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독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동독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인구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보육시설의 수가 줄었으나 보육시설의 수와 서비스제공 시간은 여전히 서독보다 충분한 상황이다.

독일의 보육시설은 3세 미만을 보육하는 탁아소(Krippen), 3~6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유치원(Kindergarten), 6~12세의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전담프로그램인 호르트(Hort)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통합아동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이 증가하고 있다.

1871년에 호르트(Kinderhort)라고 불리는 최초의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인 ‘해바라기’가 도시지역의 영세가정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 하루에 2~3시간씩 목공예이나 정원 일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

7) Froebel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영유아의 창조력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장난감과 작업재료인 은물을 개발하였고, 그의 철학은 100년 이상 독일의 보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데, 이러한 활동은 무미건조한 학교생활에 지친 아동들에게 자극과 활기를 주어 급속하게 확산되어 1913년에는 독일의 256개 지역에서 1,245개의 호르트(Kinderhort)가 세워졌고, 81,241명의 아동들이 호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박현숙, 2007: 31).

호르트(Kinderhorte): 일반 유치원에 관하여 전술된 약정 이외에도 호르트를 위해 다음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① 놀이방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독서실, 숙제실)이 필요하다. 방의 넓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놀이방이나 거실과 연결해서 독립적인 작업실이나 조립실이 필수적이다.
- ② 아동들의 조리실습을 위해 잘 설비된 부엌이 필요하다.
- ③ 성별에 따라 분리된 위생시설이 있어야 한다.
- ④ 호르트와 유치원이 같이 있다면, 호르트를 위한 독립적인 출입구가 요구된다.
- ⑤ 옥외 놀이터 이외에도 아동들의 정원실습을 위해 정원이 있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아동 스스로의 활동을 위하여 작업실, 부엌 등을 요구하고, 아동들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요구한다(김재인, 2004: 97).

1920년부터 1932년까지의 기간은 호르트교육의 개화기로 학령기의 아동보호라는 취지에서 모든 의무교육 연령층 아동들의 복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호르트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아동복지를 위한 모든 노력의 결실은 1922년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제국법’이 제정 된다⁸⁾. 이 법은 모든 독일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공동체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고,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와 준비 작업이 명시되어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1979년 유아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위한

8) Reichsgesetz für Jugendwohlfahrt, 1922):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제국법.

사회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호르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온 독일에서도 편부모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외동아동의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의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호르트(Kinderhort)는 초등학교 1~4학년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로 점심제공, 숙제와 놀이지도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저녁까지 가정과 같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로 주로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대상이 된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부모를 위해 아침7시에 개원하는 호르트는 등교 전 보육도 실시하고, 신학기에는 호르트교사가 14일 동안 아동과 함께 등·하교를 같이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게 되며, 학교적응을 돕게 된다.

아동들이 오전에 학교에 있는 동안 호르트교사는 하루일과의 계획 및 준비, 학부모 면담, 가정통신문 작성, 정보수집 등을 하고,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동들은 점심식사 후 학교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과제를 마치면 귀가 시간인 18시까지 원하는 그룹에 참여하여 여가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호르트(Kinderhort)는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교육적인 활동들이 계획된다 (박현숙, 2007: 34).

- ① 아동들은 호르트 내부에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그 곳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② 호르트는 오후에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보충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는 가족적인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 ③ 아동들은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 ④ 아동들은 ‘대 연극’을 공연할 필요 없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

받는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⑤ 아동들은 이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놀 시간과 여가가 충분해야 한다.

⑥ 아동들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교사를 파트너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서로 불안을 느낀다.

호르트(Kinderhort)의 약관을 살펴보면 독일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 약관은 다음과 같다(박현숙, 2007: 35).

① 하나의 취학아동의 집은 1개 내지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고, 1개의 그룹은 20명의 아동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아동들은 가능하면 모두 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③ 각 그룹 당 2명의 사회교육 인력이 배치된다.

④ 취학아동의 집의 개방시간은 7:00부터 18:00까지로 확정한다.

⑤ 공적인 휴일을 제외하고 방학기간에도 취학아동의 집은 개방한다.

⑥ 취학아동의 집의 각 그룹 당 1개의 방이 오로지 이 목적으로만 주어진다.

⑦ 각 방은 아동들의 필요에 따라 개조된다.(예, 영역별 분리)

⑧ 학교의 다른 방들은 취학아동의 집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⑨ 취학아동의 집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GTK(아동보호에 관한 법령)⁹⁾을 토대로 한다(여성가족부, 2007: 14-22).

GTK(아동보호에 관한 법령)는 14세까지 즉, 학령기 아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재인, 2004: 98-100).

제1조 개념정의

아동들을 위한 주간보호기관(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이란, 유치원, 호르트, 그리고 하루 중 일부나 하루 전체를 아동을 위해 종사하는 그 밖의 기관들을 말한다.(.....) 호르트는 만 14세까지의 학령기

9) GTK: Gesetz über 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 주간아동보호기관에 관한 법령(노드라인-팔렌스주)

아동들을 위한 주간보호기관이다. 초등학교 내에 있는 호르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위한 ‘취학아동의 집(Schulkinder-Haus)’이라 칭한다. 호르트는 학교법의 의미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취학아동의 집’ 형태에 속한다.

제3조 호르트의 임무

- ① 호르트는 독자적인 교육임무를 가진 사회교육기관이다. 아동들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서 호르트는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동의 자주성이 성장하도록 지지해야 하고, 또, 인도와 단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호르트는 학교생활만으로는 부족한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요구, 여가예의 관심 내지 필요 등을 참작해야 한다. 호르트는 학교와 긴밀하게 공동으로 작용해야 한다.
- ② ‘취학아동의 집’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호르트와 초등학교의 교육임무가 잘 조화된 교육적 개념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식, 상황,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고, 아동 개개인이 그룹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반려의식이 있고, 폭력이 없으며, 동등하게 함께 하는 것을, 특히 성차별 없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호르트나 ‘취학아동의 집’의 과제이다. 장애아동의 통합은 특히 촉구되어야 한다. 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들은 공동생활의 내면적 과제와 긍정적인 작용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고, 연령에 적합한 민주적 행동양식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문화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력을 발달시켜야 하고, 관대함이 장려되어야 한다.

제6조 부모위원회

- ① 부모위원회는 부모들 중 최소한 2명으로 구성된다. 호르트의 각 그룹의 부모들은 그룹 당 위원 1명과 부위원 1명을 선출한다.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호르트는 2명의 위원과 2명의 부위원을 선출한다. 부모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3번 개최된다.

제7조 주간아동보호기관 위원회

① 대표와 호르트내의 교사진들은 부모위원회와 함께 주간아동 보호기관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위한 원칙을 협의하고, 필요한 공간적, 물질적, 인적장비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의 호르트 입원기준을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3번 개최되고, 아동의 학교교사들이 초대 손님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호르트 업무에의 아동들의 참여

- ① 아동들은 호르트일상의 형태에 있어서, 자신들의 연령과 필요에 적합하게 같이 논의한다. 그들은 그들 중에서 1명의 대변인과 각 그룹을 위한 대리인을 1명씩 선출한다.
- ② 아동들은 호르트 직원들 중에서 1명의 신임인을 선출할 수 있다. 신임인은 부모위원회, 기관위원회에서 아동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다.

제9조 개원시간

- ② 개원시간은 부모위원회에서 대표가 참석한 이후에 대표에 의해서, 그리고 ‘취학아동의 집’을 위해서는 학교회의에의 참석이후에 확정된다. 대표는 신청아동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청소년원조기관의 대표에게 확정된 개원시간을 알려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시간은 부모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지역사정에 따라 다른 개원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공청소년원조기관의 지역대표와 부모위원회와 함께 서로 협의하여 개원시간을 논의한다.

제19조 개방시간

- ② 호르트의 개방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에 달한다.
- ③ 개방시간은 원칙적으로 아동 개개인의 보호시간을 넘는다. 몇 명의 아동만 출석한 경우에는 전체인력의 출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제2절 스웨덴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세계제일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2008년에 실시된 OECD 10대 보육기준 정책평가에서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받은 복지선진국이다.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는 보육제도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몫으로 여겨졌으나 산업화로 인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자 스웨덴정부는 17세기 이후 사회적 대책으로 빈민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여 보호하였고, 18세기에 구빈법을 제정하여 15세 미만의 아동은 구빈의 대상으로 간주 이때부터 아동들은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청소년백서, 2009: 33-35).

1854년 최초의 탁아소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 중반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빈민층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탁아소가 확대운영 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자녀의 양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196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스웨덴의 현재와 같은 보육제도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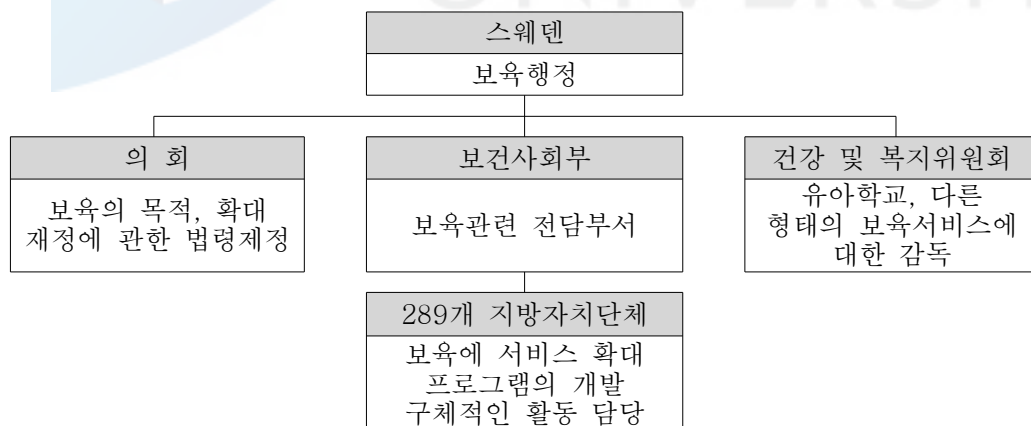
1960년대는 스웨덴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시기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자 부족한 보육시설과 기존시설의 미비가 명확해져, 1968년 어린이 센터에 대한 왕립위원회(전국보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hild Care)가 설립되어 공공보육의 욕구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the Pre-School)가 마련된다. 1973년 ‘취학 전 교육법(Pre-school Act)’제정 때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1996년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호를 전담함으로써 학교체제와 아동보호의 통합을 마련하였다.

1975년 유아학교법(National Pre-school Act)에서는 아동보육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임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그 규정은 ① 공적보육의 체계적 확대 ② 계획은 공적문서로 보고하기 ③ 모든 6세 아동에게 최소 525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④ 특수아도 우선적 입소 ⑤ 도입부터 모든 6세 아동에게 실시로 되어 있다. 아동교육과 보육에 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목표설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재인, 2004: 51).

- ① 질적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 ② 아동을 자극하고 발달을 도모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에게 좋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부모와 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 ③ 교육 및 보육의 대상은 모든 아동이며, 특수아동에게 우선권이 있다.
- ④ 부모가 가정과 직장(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⑤ 지방정부는 보육 및 교육기관에 공적기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⑥ 보육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시스템의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1985년 스웨덴의 국회에서는 정부가 1991년까지 1.5~6세의 모든 아동은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공적 아동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안을 동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아동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로 정부의 부담이 늘고, 각 기관마다 대기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5년 1월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의무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에는 1~12세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김재인, 2004: 52).

<그림 3-1> 스웨덴의 보육행정체계



<그림 3-1>과 <그림 3-2>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의회는 보육에 관한 목적, 확대 및 재정에 관한 법령제정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보육담당부서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및 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유아학교에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유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돕고, 보육의 질과 내용을 감독한다. 최근에 와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보육의 감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추세로 보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은 289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스웨덴의 아동보육

아 동 보 육					
유아학교 활동			학령기 아동보육		
개방형 유아학교	유아학교	가정	보육	레저타임센터	개방형 레저타임활동

출처: 김재인(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p. 58.

<표 3-1>을 살펴보면 공공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탁아소의 개념으로 편부모와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시설로 부모의 사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보육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원은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성격과 유사한 모습이다. 시간제와 개방유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제의 경우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3시간씩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영되고, 개방유아원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지방정부에서 탁아모를 고용하여 1명의 탁아모가 3가족의 자녀를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는 보육형태로 공공보육시설과 놀이센터가 증가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센터는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의 형태로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놀이센터와 학교를 통합하여 학교교사들과 놀이지도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추세이다.

<표 3-1> 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

유 형		대 상	운영시간	운 영 내 용
공공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 6-7세까지	종일제 시간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탁아소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운영 편부모/ 맞벌이부부에 우선권 야간보육가능
유아원 Pre-School	시간제	취학 전 아동	하루3시간 방학/ 공휴일제외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오전반/ 오후반
	개방		1주일에 1일-5일	수시로 이용가능 부모나 보모와 참석 하루에 몇 시간만 운영가능
가정보육시설 Family Day Care		취학 전 아동	종일제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육시설 지방정부가 탁아모를 고용하는 형 태
놀이센터 Leisure Time Center		초등학생 7~12세	학교 수업 전/후 학교휴일	학교수업 전/후, 휴일에 운영 아침/간식제공, 부모는 월 단위 수업료를 지불 지방정부에서 놀이센터를 학교와 통합하는 추세
레저클럽 Leisure Club		초등학생 고학년 9~12세	학교 수업 전/후 학교휴일	고학년을 대상으로 친구들과 다양 한 레저를 체험 놀이센터보다 저렴한 회비
민간보육시설 Private Care		보육이 필요한 아동	학교 수업 전/후 학교휴일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하는 시설과 부모협동체에서 운영 하는 시설

레저클럽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놀이센터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놀이센터나 레저클럽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부모협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며, 두 시설모두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 시설보다는 운영에 대한 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 후 아동보육은 교육법(Education Act)에 근거한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스웨덴의 교육법: 유아교육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복지

조항	내 용
제1조	·지방정부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육제공의 의무 ·학령기 아동보육의 대상: 학교에 다니는 12세까지의 아동
제2조	·학령기 아동보육 운영의 형태: 레저센터, 개방형레저센터, 가정보육, 유아학교
제3조	·학령기 아동보육의 목적: 학교보완, 의미 있는 여가생활제공, 아동발달 지원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을 지닌 교사가 운영 ·혼합연령반, 적절한 집단크기 유지해야 하고, 개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4조	·병원 및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보육 시 레저센터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육기회의 보장
제5조	·학령기 아동보육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의회 결정에 따라 수행이 가능
제6조	·학령기 아동보육은 부모가 일 혹은 학업을 하거나 아동의 요구에 따라 제공
제7조	·지방정부는 보호자가 학령기 아동보육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제공할 의무가 있음 ·보호자의 요구 반영된 보육형태로 제공해야
제8조	·보육기관은 아동의 집이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제공해야
제9조	·특수아동을 위한 보육기회 제공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서비스 필요 아동을 확인해야 하며, 부모에게 활동의 내용과 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10조	·보육비용: 합당한 비용, 지방정부가 정한 비용 초과 불가능
제12조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해야
제13조	·회사, 단체, 재단 혹은 개인이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활동 내용도 감독 받아야 함
제14조	·허가는 질적 수준 및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15조	·허가를 얻어 기관을 운영할시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 ·감독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볼 수 있어야 함
제16조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지방정부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폐쇄조치 가능
제17조	·지방정부의 사립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18조	·상업적 사립기관에서의 아동의 개인적 정보누설금지
제19조	·기관들의 지방정부결정에 대한 항소가능 ·법정의 결정은 즉시 효력발생
제20조	·허가 없이 운영 시 벌금부과 ·고발조치는 지방정부나 스웨덴 국립교육원이 할 수 있음

출처: 김재인(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p. 67.

제3절 미국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며 방과 후 아동을 위한 문제를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다루며 그 필요성에 의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16개 주에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보육지원에 관한 법규화를 통해 공립초등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운영자금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는 방과 후 보육은 학령기 아동보육(School-age Care & Education)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6세부터 14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을 학교와 학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보호하고, 학업의 향상, 긍정적 사고발달, 사회성 개발 등을 돕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의 방과 후 학교는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방과 후 학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YMCA, YWCA, 청소년단체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 기반을 두고 학업의 성취나 보충수업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운영하지만 학교의 교실을 임대하여 서로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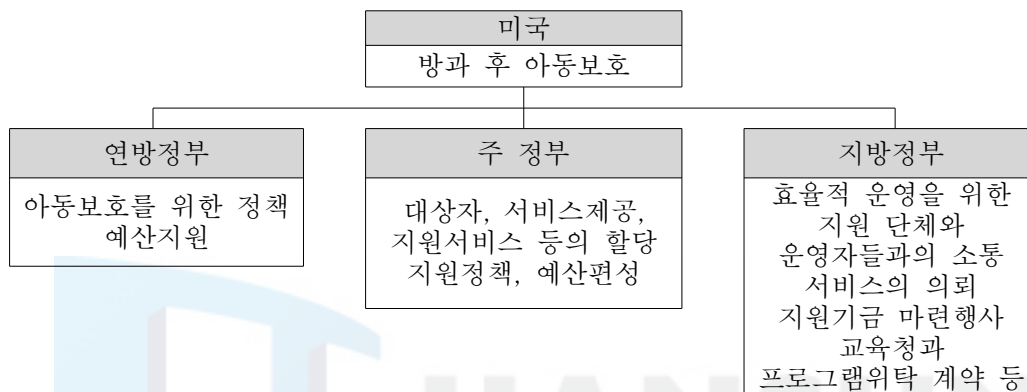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은 주로 오후2시~3시 사이에 시작되며, 오후 6시경에 마치게 된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밖 프로그램(Out of School Program)과 함께 사용되며, 수업 전과 후, 주말, 휴일에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방과 후 아동보호와 교육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관장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주의 교육기관(Local Education Agencies)과 민간기구(Non-Profits) 등에서는 예산을 부여한다. 공식적인 예산은 주 교육기관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김재인, 2004: 131).

<그림 3-3>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저

소득층 가정에는 공적지원 등을 한다. 주정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자, 시설 및 서비스제공, 각종 혜택을 할당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단체 및 운영자들과의 소통, 서비스의 의뢰, 시설의 제공, 프로그램의 유지관련 제반사항 조달, 재정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참여, 교육청과의 방과 후 프로그램위탁 계약체결, 학교교사와 방과 후 교사의 소통, 기부금 또는 물품의 전달 등의 실무적인 활동을 담당한다.

<그림 3-3> 미국의 방과 후 행정체계



미국의 방과 후 아동학교 관련법으로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이 있다. 이 법에는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관련법 정의:

- a) 목적 - 이 조항의 목적은 지역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학습센터에서는:

- ① 학생들, 특히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을 돕고, 학문적 심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읽기, 수학과 같은 중핵교과에 대한 주(州) 및 지역적 학생성취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서

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② 학생들에게 청소년 개발활동, 마약 및 폭력예방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미술, 음악, 그리고 오락프로그램, 기술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부가서비스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이 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기 학문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③ 지역학습센터에서 추천한 학생가족들에게 학습센터의 문해교육 및 관련 교육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b) 정의 - 이 조항에서;

①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실체임을 의미한다.

(a) 방과 후나 여름방학기간과 같이 학교 외 시간 또는 학기가 아닌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교의 정규학문프로그램을 보강하는 학문적 심화활동과 마약 및 폭력예방, 상담, 미술, 음악, 오락, 기술 그리고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다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읽기와 수학과 같은 전통적 중핵교과에서 주 및 지역적 학생성취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b) 학습센터가 추천한 학생의 가족들에게 문해교육 및 관련 교육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보상프로그램(Covered Program)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 장관이 X장 조항1을 근거로 승인한 프로그램 (이 조항이 '2001 학습지진아퇴치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제정일 전에 효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b) 허가(승인)기간이 학습지진아퇴치법 제정 시기에 끝나지 않았던 프로그램

③ 자격이 되는 독립체(Eligible Entity)라는 용어는 지역의 교육대행기관, 지역공동체기반의 조직, 기타 공공 또는 사적 독립체, 또는 그런 대행기관, 둘 이상의 조직 및 독립체의 조합을 의미한다.

④ 주(State) 는 50개 주 콜롬비아 지역, 푸에르토리코 공화국을 의미한다.

또한 주마다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규정이 있어 프로그램은 주에 의해 허가를 받고 진행된다(김재인, 2004: 129-130).

<표 3-3> 미국 방과 후 활동의 유형

구 분	학령기 아동보호	청소년 개발	보충학습	특기적성개발
목 적	· 맞벌이 부모의 자녀보호 · 아동발달지원	· 청소년발달 촉진 · 청소년문제 행동예방	· 학습활동제공 · 학력성취증진 · 학력격차해소	· 예술, 체육 등 특정영역의 기능 개발 · 다양한 주제나 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 · 풍부한 경험제공
책무성 및 효과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접근 · 학부모참여증가 · 지역사회학교 발달 · 자격증과 인증제	· 청소년범죄와 일탈행동 감소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접근 · 결과에 근거한 평가 · TV시청감소 · 자아존중감 향상	· 교과영역지도 · 주정부의 학력성취평가 · 학교성적 · 교육, 보건, 안전관련 법규	· 자발적 참여비율 · 특정 활동의 경우 자체적인 평가(과학박람회, 체육대회 등)
지도자	· 아동보육지도자	· 교사 · 보조교사, 대학생 · 청소년지도자	· 교사 · 전문분야별 보조교사	· 특정영역의 전문가
재 원	· 연방/ 주보조금 · 지역기금 · 학교기부금 · 아동발달기금 등	· 부모 · 민간기금 · 주/연방정부 범죄예방기금 등	· 부모 · 주/연방 보조금 · 교육청 · 영리프로그램의 수업료 등	· 부모 · 학교 밖의 경우 부모 ·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은 무료/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	· 가정서비스 · 레크레이션 · 만남의 장소 · 독서, 음악, 미술 등	· 성인교육강좌 · 약물남용상담 · 청소년 법률프로그램 · 건강, 사회적 기술, 교육, 성격, 지도력 등	· 숙제보조, 학습활동 · 과학, 영어, 일기 등 풍부한 학습기회	· 컴퓨터, 요리, 스포츠, 현장견학, 미술, 음악, 무용 · 학술, 교양 · 사진학, 영화, 컴퓨터, 워크숍, 도자기, 요리, 영양학 등

출처: 김수동(2006), “외국의 방과 후 교육활동운영 사례”, pp. 43-53.

<표 3-3>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저소득층 자녀의 보호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고,

주된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의 보호, 청소년개발, 보충학습, 특기적성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활발한 활동이 특징이다(정상숙, 2008: 41).

미국의 대표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21세기 지역학습센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21st Century Learning Community Centers), 청소년개발프로그램(Youth Development Programs), LA의 BEST프로그램, 리차드 네그론 아동구호협회(Richard Negrón of the Children's Aid Society), 미국 소년소녀클럽(The Boys & Girl's Club of America) 등이 있다.

특히 21세기 지역학습센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공립학교들의 방과 후 학교의 참여가 늘었으며, 이후 공립학교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주도하게 되었다.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자기표현, 창조적 표현 등을 제공한다. 리차드 네그론 아동구호협회는 1992년 뉴욕시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학교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뉴욕에 현재 8개의 학교와 미국의 25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LA의 BEST프로그램은 LA지역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53개 지역의 학교에서 10,000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주 5일, 1일 3시간, 과제 돕기, 보충수업, 자유 활동, 간식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주 정부, 시장, 교육청 등과 파트너십을 갖는 비영리단체로 정부와 학부모 등의 지원을 받는다.

미국 소년 소녀클럽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소년단체로 현재 2,300개의 학교와 센터 등에서 3백만 아동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5개의 핵심내용은 ① 리더십발달 ② 학습과 경험발달 ③ 건강과 생애능력 기술 ④ 예술 ⑤ 스포츠, 운동, 오락 등이다.

제4절 일 본

일본은 1947년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요보호 아동중심에서 모든 아동의 건전육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한다. 1950년대에 도쿄·오사카에서 학동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가 최초로 시작되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여 학동보육의 요구가 크게 증가한다.

1962년 학부모 중심으로 동경에 학동보육연합협의회가 형성되어, 1972년 전국학동보육연합협의회로 발전되었고, 정부에서도 최초의 공립학동보육기관인 시부야학동관(1962년)을 설립하였다. 1963년 후생성¹⁰⁾에서는 아동관에 처음으로 국고보조를 실시하여 방과 후 보육을 지원하였다(박현숙, 2007: 25). 또한 선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정부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정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후생성에서는 1991년과 1995년에 방과 후 아동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발전을 주도하여 1997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고, 저녁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사업비 1천억 엔을 투입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아동보육은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과 지역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방과 후 아동모임)이 있고, 두 부처의 방과 후 활동을 제후한 방과 후 아동플랜이 있다. 일본의 방과 후 서비스는 학교, 아동관, 아동센터, 민간 및 아파트, 공적시설, 공유지전용시설, 보육소, 민유지전용시설, 유치원, 집회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정상숙, 2008: 46).

일본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예습, 복습 같은 학습과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 및 공작이나 종이접기 등 문화 활동, 지역 어른들과의 교류, 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전직교사나 지역 주민 등이 이들을 지도하고, 모든 아이들은

10) 후생성(1938년~2001년 1월)은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후 후생노동성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모의 10세미만의 자녀들은 전임지도원들이 저녁 7시까지 보육을 담당한다.

일본의 주요 방과 후 시설은 학동보육, 아동관, 아동육성클럽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며,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 방과 후 아동교실(학동보육)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는 방과 후 아동교실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2만 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와 주말에 빈 교실을 활용하여 활동한다.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가하여 아이들과 공부, 스포츠, 문화 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저 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이와 연대하여 종합적인 방과 후 아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지역 아동교실(아동관)

2004년 이후 방과 후 아동들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화, 지역과 가정의 학업능력 저하 등에 따라 대책으로 지역아동교실이 문을 열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학교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장소를 마련하고,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는 것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예산의 50%를 담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등 적용된 보육료를 부과한다. 주요 활동의 내용은 문화, 스포츠, 자연체험 등으로 이 프로그램은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 건전 양육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3) 아동육성클럽

1997년 육아복지법 개정에 의하여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등의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관이나 학교의 여유교실, 공공회관 등 안전한 장소에서 방과 후에 적당한 놀이를 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다(정상숙, 2008: 48).

클럽운영의 주체는 시·정·촌이고, 아동관 이외 보육소, 학교의 빈 교실 등의 가까운 사회자원을 활용하며, 방과 후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클럽의 운영비는 참여 아동의 부모가 1/2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클럽의 참여 아동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1/3으로 나누어 부담한다.

4) 방과 후 아동플랜

방과 후 아동플랜은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방과 후 아동클럽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종합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공동 참여하여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과 후 아동플랜의 운영은 시정촌과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 있고, 시정촌은 지역 내의 전체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동플랜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간의 연계와 해당 시읍면의 방과 후 활동의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여한다.

각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중심으로, 학교의 여러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집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간단한 안전사고 시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이나 갑자기 우천 시 등에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이다. 후생노동성에서 1991년부터 실시하는 방과 후 아동대책사업은 예산만의 보조 사업으로서 법률을 기초한 국가의 학동보육제도는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방과 후 아동보육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김재인, 2004: 183).

아동복지법 제6조의 2의 12항: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략 10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노동 등에 의해서 주간 가정에 없는 것에 대해 정 명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업종료 후, 아동후생시설 등을 이용

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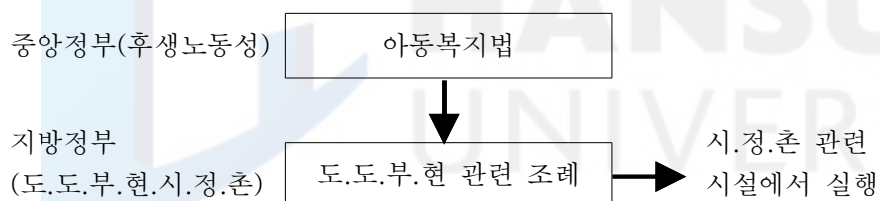
제21조의 26항:

시정촌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6조의 2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용에 관한 알맞은 상담 및 조언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을 함과 동시에 해당 시정촌 이외의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을 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에 의해서 해당아동의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용의 촉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복지법시행령(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실시기준)

제1조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란 이것을 이용하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위생 및 안전이 확보된 시설을 갖추는 등에 의해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여 실시해야만 한다.

<그림 3-4>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 법



출처: 김재인(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p. 184.

<그림 3-4>는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 관련법 및 조례를 중앙정부(후생노동성)와 지방정부(도·도·부·현·시·정·촌)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실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내리마 학동 구라부(클럽)조례(1989년 12월 11일)

내리마구(練馬區)조례 제56호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昭和 22년 법률 제164호) 제34조의 7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을 하기위해, 내리마구립 아동클럽(이하 「아동클럽」 이라고 함.)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보육 및 지도를 하고 좀 더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위치) 제2조 아동클럽의 명칭 및 위치는 별지와 같다.

(용어의 정의) 제3조 이 조례에 있어서 「보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에 제시된 사유에 의해서 아동이 방과 후 또는 학교가 휴교일 때, 보호자가 보육육성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① 보호자가 노동, 취학 또는 기능훈련을 하고 있을 때
- ② 보호자가 질병 또는 심신이 장애인 상태일 때
- ③ 보호자가 간호 또는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 ④ 前 3호에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 구청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대상아동) 제4조 아동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내리마구내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학교교육시행령(昭和 28년 制令 제340호)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역이외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내리마구 교육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아동을 포함.)으로 내리마구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함.)으로 정하고 있는 것.

(휴업일) 제5조 아동클럽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특별 임시휴일로 정할 수 있다.

- ① 일요일
- ② 국경일에 관한 법률(昭和 23년 법률 제178조) 제3조로 정해진

휴일

③ 1월 2일, 1월 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육 및 지도시간) 제6조 학동클럽의 보육 및 지도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 휴교일에 있어서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前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요일에 있어서는 보육 및 지도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前2항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입회순서 등) 제7조 아동을 학동클럽에 입회시키려고 하는 보호자는 규clr으로 정해진 곳에서 신청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구청장은 前항을 승인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회를 승인한다.

(입회불인정) 제8조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을 때, 前조 제1항의 입회를 승인하지 않는다.

① 학동(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질병과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집단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② 학동클럽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③ 前 2호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구청장이 입회를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보육료) 제9조 학동클럽에 입회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1인 월 5,500엔의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前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계를 우선으로 하는 세대에서 2인 이상 아동이 학동클럽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2인 이후의 아동이 내는 금액은 해당아동 1인 월 4,500엔으로 한다.

(보육료 감면) 제10조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前조에 서 규정한 보육료를 감액하고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보육료 환불 불가) 제11조 납부한 보육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가 있다.

(입회승인 취소 등) 제12조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입회승인을 취소 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① 이용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했을 때
- ②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 ③ 적당한 이유 없이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 ④ 재해, 기타 이유에 의해 시설 등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 ⑤ 前 각호에 제시한 것 이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절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주요 복지선진국가인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의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도입배경과 관련법규정,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선진 4개 국가 모두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법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집행, 예산, 관련법규정 등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주관부서가 보건부와 후생노동성으로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복지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즉, 독일과 일본에서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복지서비스로 다루는 반면, 미국과 스웨덴은 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진 4개 국가는 모두 근거 법을 규정하고, 확실적인 전달체계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근거 법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원화된 정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보건복지부)와 분산된 전달체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인 반면, 미국

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보다 민간단체의 역할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스웨덴과 미국의 중간수준의 국가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에 근거한 법 규정의 마련, 예산지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지만 예산의 배정, 운영관련 인가, 감독 등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4> 선진복지국가의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비교

구분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관련법	아동·청소년 복지법 주별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법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주별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예산지 원	국가지원·부모부 담	국가지원·부모부 담	국가지원·부모부 담(50%)	국가지원·부모부 담	제한적 국가지원, 부모부담
주관부 처	청소년·가족·여성 보건부	교육과학부	연방교육부	후생노동성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여성 가족부
지방자 치	주 청소년부 시 청소년국	교육위원회 국립교육원	교육부(주) 국가기관·민간단 체	도도부현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공통점	근거 법 규정의 마련과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전담부서의 운영				
차이점	주관부서	국가지원		지원 대상	
	스웨덴·미국: 교육부 독일·일본: 복지부 한국: 교육·복지·여성가족	스웨덴: 가장 많은 지원 미국: 민간의 개입 많음 독일·일본: 국가의 50%지원		독일: 6~12세 스웨덴: 15세미만, 보육이필요한 아동 미국: 6~14세 일본: 1~3학년(10세 미만)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과 조합주의 국가의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민간단체의 개입 또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없는데 반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민간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같은 자유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는 민간의 개입이 낮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획일화 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카데미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의 보완을 통한 종합적인 방과 후 학교운영에 관한 독립법안의 마련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프로그램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확대하여 사교육 및 청소년문제의 예방하고, 학교교육의 연장이 아닌 휴식과 놀이, 체육·문화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과 후 학교정책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가족정책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과 보육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가지 영역인 할당영역(Allocation), 대책영역(Provision), 재정영역(Finance), 전달영역(Delivery)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을 평가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절 할당영역

할당영역이란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자격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즉,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하는 영역이다.

1. 방과 후 학교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복지법상의 18세미만의 아동 및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이 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방과 후 보육시설의 아동은 만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4-1>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이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초등 학생	저학 년	남	18,348	34,617	25,149	16,524	17,871	19,628
		여				16,343	18,101	19,425
	고학 년	남			21,426	13,785	16,230	18,733
		여				14,392	16,933	19,299
합 계			18,348	34,617	46,575	61,044	69,135	77,084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http://www.icareinfo.info/> 재인용.

방과 후 학교의 이용대상은 만 6~12세의 학령기아동이다. 청소년아카데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만 9~13세의 아동이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에서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3,274개소로 증가하였다. 이용아동 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94,406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윤혜순, 2009: 43). 이는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제16조가 개정된 이후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용아동의 93%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도 포함되어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아동은 초등학생이 된다.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시설이용대상에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방과 후 아동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과를 두어 전담토록 하였으나, 2004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중점을 두어 방과 후 아동보육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또한 2004년 6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¹¹⁾의 육아지원정책방안에서 아동보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확대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 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설정하여, 2005년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보육시설의 확충을 중단하였다.

<표 4-2> 방과 후 보육시설이용 현황

구 분	방과 후 보육(어린이 집)
대 상	초등학생 1~6학년(만6~12세), 이용아동 수: 12,642명
주요기능	보육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4시간 이상/일(토요일 운영), 시설현황: 838개소

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8보육통계”, p. 44 재인용.

11)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책마련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03년 10월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운영하고,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05년 1,479개 방과 후 보육전담시설(통합시설포함)에서 23,321명이 이용하였고, 2007년 1,124개 보육시설에서 19,811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며, 2009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838개 방과 후 시설(방과 후 전담+방과 후 통합)에서 12,64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특기·적성교육, 초등보육프로그램, 수준별 보충학습,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방과 후 학교는 2005년 48개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동을 시작하여 2006년 10,877학교에서 운영하고, 참여 학생의 수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36.4%인 7,642명이 참여하였다(정상숙, 2008: 62). 2009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학생의 54.4%인 1,890,071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4-3> 방과 후 학교이용 현황

구 분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학교
대 상	초등학교 1~3학년(만6~8세)	초등학생이상(만6~17세)
이용아동	1,890,071명(전체학생의 54.4%, 2009년 기준)	
주요기능	보육, 교육프로그램 제공	특기적성·보충학습 제공
운영시간	4시간/일(13시~17시)	자유적으로 운영
학교 수	5,829개 초등학교(2009년 기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e_kor/inform/ 재인용.

청소년아카데미는 2005년 9월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8년 185개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가정의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배양과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등 종합학습지원 및 보호를 청소년아카데미의 이용현황은 2005년에 2,350명, 2006년에 4,200명, 2007년에 6,300명, 2008년에 7,68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청소년백서, 2009: 147).

<표 4-4>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이용 현황

구 분	청소년 아카데미
대 상	초등학생4~6학년(만9~11세), 중학생1~2학년(만12~13세)
이용아동	7,680명(2008년 기준)
주요기능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제공
운영시간	주5일(15~22시)/ 토요일 운영
시설현황	185개소(2008년 기준)

출처: 청소년백서(2009), p. 147 재인용.

이밖에도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모태가 된 청소년공부방이 전국에 3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9: 153).

2. 방과 후 학교 할당영역의 문제점

3개부 4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아동의 연령대가 중복이 된다. 아동의 연령대가 중복이 된다는 것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이용아동이 서로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유사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시행되는 법마다 대상의 연령이 학년의 구별 없이 나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27조에서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을 필요할 경우 만12세까지로 기준을 연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로 되어있다.

이용 대상아동을 저소득층만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 상위계층이나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은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중산층의 경우 이용을 원할 경우에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동에게는 서비스의 중복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0명의 아동을 1명의 보육교사나 청소년지도사가 학습지도, 특별활동, 상담, 정서지도 등을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많고, 그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높아만 가는 수요자의 욕구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나 운영이 병행하여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방과 후 학교 할당영역의 개선방안

1) 방과 후 학교 관련법제정

현재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법은 영유아보육법(27조)과 아동복지법(16조)으로 3개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4개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부담의 가중은 물론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의 기준적용이 모호하여 혼란스럽다.

대안이 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생들에게 이중적인 법적용을 한다는 문제와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이 예상되며,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운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의 설치 및 운영, 대상의 기준, 프로그램, 교사의 자격 및 처우, 교사의 교육 및 관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 다원화 되어 있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독립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보편적 복지로서의 참여확대

아동기의 적절한 투자가 미래의 희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할 때 방과 후 학교의 정책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차 상위계층이나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아동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경감시켜주고, 일반아동

은 사교육비부담을 완화하여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 맞벌이 가구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외에도 저 출산시대의 외동아동들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4세 이상(방과 후 취학아동 포함)은 20명, 방과 후 학교 교사는 1인당 30명으로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높게 설정되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교사의 인건비, 보육비 등 시설의 재정과 연결되는 문제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담과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교사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로 줄이거나 초과될 경우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대책영역

대책영역이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는 어떠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에 대한 영역이다.

1.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 지역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한다. 주로 정규교과학습지도, 과제지도, 영어, 한문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간의 차이에 따라 문화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보호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이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육시설에서는 자녀의 방과 후 보호와 정서지도, 보충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완화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 및 맞벌이 가정·한 부모가족·저 소득층의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교육프로그램,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적성·보충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특기적성 교육과 보충학습, 급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공통과정은 기본학습, 과제지도, 자기주도 학습이 있고, 전문선택과정의 특기적성이 있으며, 체험학습과정의 문화유적지, 박물관, 민속마을답사와 같은 현장학습이 주종을 이룬다. 이외에도 생활지원으로 상담, 건강관리, 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부방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학습지도를 담당한다. 그밖에 상담, 도서열람 및 대출, 특기적성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제공한다. 일부에서는 문화 활동, 캠프 및 수련활동이 병행하여 제공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의 읍, 면, 동에 위치하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시설로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생활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표 4-5>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구 분	내 용
생 활 지 원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사 례 관 리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 등
지역자원연계	지역 내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 연계, 홍보 등
학습지원	학교생활준비 지원, 학년 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지도, 학습지원 성과평가, 과제지도, 예체능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지원 등

출처: 청소년백서(2009), p. 143.

<표 4-6> 지역아동센터의 5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일시
보호	급식지원	학기중: 중식, 석식지원 방학중: 중식지원	전원	주5회
	야간보호	야간보호를 위한 오후9시까지 운영		
	가쁜한 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손질	전원	주1회
교육	자아독립 프로젝트	음식만들기: 장보기, 가게부쓰기, 칼·도마사용법, 설거지까지 과정을 배우고 시험을 본다 바느질: 바느질 기본 익히기, 단추달기, 구멍난 곳 메우기 빨래: 세탁기사용법, 널기·개기 대중교통이용: 갈 곳을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주1회 (요일을 정해서)
	자치회의	모둠별 회의와 전체회의/공부방운영에 참여/프로그램평가와 계획	전원	주1회
	기행	학년별 모듬으로 운영 기행갈 곳을 정함-공부-재정마련-다녀오기	초등 중심	주1회
문화체험	영화관람	함께 볼 영화를 정하고, 관람 관람예절 배우기	전원	격월
	대중스포츠경험	탁구, 볼링	전원	월2회
	박물관기행	박물관기행 등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곳을 가본다	전원	년3회
복지	아동상담	담임선생님을 정해 정기적인 아동상담, 부모상담	전원	수시
	치료	-마음성장미술 -3년째 매주 수요일에 진행 -집단과 개별을 나눠 진행	전원	월1회
지역사회 연계	치과치료/ 건강검진	치과정기검진, 비염 등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치료	전원	수시
	어린이날 행사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 -작은 도서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원	년1회
	몰래산타	-나눔 활동에 참여 몰래 산타 공개모집 -어려운 가정 아이들 노래와 선물 -복지기관과 연계	전원	년1회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http://www.icareinfo.info/> 정책자료

지역아동센터의 인적구성은 대표자와 실무자,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실무자의 수가 1~2인이 근무하는 센터가 과반수이상으로 근무

환경이나 조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실무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로 구성되며,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등의 보조 인력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주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7시까지로 전담교사가 아동보육을 담당하지만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충분한 의사소통과 생활·아동지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주로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과 같은 생활지원과 방과 후 보육이 주 기능을 담당하고, 과제지도를 통한 학습지원과 자율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방과 후 보육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보호와 학습지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1인당 아동 20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표 4-7> 방과 후 학교 강사구성 현황

강좌유형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특기·적성	33,320	29.7	79,013	70.3	112,333	100.0
교과	116,315	89.5	13,610	10.5	129,925	100.0

출처: 청소년백서(2009), p. 294.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보육프로그램과 정규교과연계프로그램, 외부위탁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보육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의 보육, 보호 및 선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강화, 인성·창의성·특기개발 등과 같은 개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편성된다.

정규교과연계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체육, 영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저학년의 경우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고학년에서는 교과위주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외부위탁프로그램은 외부단체(대학, 비영리단체, 협회 등)와 위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영

어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과 후 학교의 인적구성은 현직 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0월 기준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수는 특기·적성프로그램 112,333개, 교과프로그램 129,925개, 초등보육프로그램 3,334개로 총 245,592개로 전년 대비 12.5%, 70.4%, 22.7%, 37.3%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인 과제지도와 보충학습 2시간, 전문선택과정인 문화·예술·스포츠·체험활동·창의성개발에 2시간, 급식 1시간 외 상담, 생활·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토요일도 운영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연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4-8>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구 분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2007. 10	99,891	76,242	2,718
2008. 10	112,333	129,925	3,334

출처: 청소년백서(2009), p. 293.

청소년아카데미는 시설대표자의 책임 하에 전담인력(운영책임자, 실무지도자)을 각 1명씩 두어 과제지도와 자기주도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운영책임자는 청소년 및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경우 우대한다. 실무지도자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공자(2년제 이상)로 청소년 지도에 부합하는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부방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청소년위원회의 조사에서 공부방은 운영책임자, 상근교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이 열악하여 실무자(상근교사)가 공공근로요원이나 자원봉사자로 대치되기도 한다. 전반적인 인력의 운영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가장 많고, 실무자가 소지한 자격은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되어 있다.

2. 방과 후 학교 대책영역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각 기관의 다양성과 관할하는 부처가 다른 상황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각 기관의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혜자에게 선택에 혼란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며, 자원의 낭비로 보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은 발달수준, 발달과업, 생활유형 등에 있어 영유아와 차이가 있어서 이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방과 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교사가 초등학생의 학습지도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방과 후 학교 지도는 기관별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등학교 교사 및 외부강사 청소년지도사, 특별활동지도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과 프로그램의 대상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방과 후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양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3. 방과 후 학교 대책영역의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은 학교(초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과성을 감안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가 공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네트워크 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정보센터를 확대함은 물론 영역별로 각 부처(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참여를 통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제공과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대상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 인적자원의 개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교사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등학교 교사 및 외부강사, 청소년지도사, 특별활동지도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은 현직교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96%), 외부 강사활용은 4%에 머무르고 있다(정상숙, 2008: 79).

현직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강사료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교사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은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교사의 역할이 일방적인 지시사항이 아닌 협력관계로 운영되어 방과 후 교사들이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인식전환 및 신분의 보장이 요구된다.

3)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개발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이 일반사설학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다. 일반사설학원의 경우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운영자체의 의미가 크게 손상된다. 이에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욕구 맞는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으로 전인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초등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욕구가 다르고, 지역이나 대상의 차이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대상아동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면 프로그램 참여아동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없으며 흥미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운영매뉴얼을 통한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수업의 연장이 아닌 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고, 안전한 보호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호와 교육, 복지가 하나로 합쳐진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제3절 재정영역

재정영역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에 대한 영역으로,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1. 방과 후 학교의 재정지원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호와 교육을 통해 안전망 구축과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읍·면이 있는 시·군에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며,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비, 차량운영비,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2006년에는 19개 군이 2007년 89개 시·군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에는 전체 농산어촌지역 140개 시·군이 지원되었다.

농산어촌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실시결과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활성화되어, 2008년 하반기에는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참여율이 68.7%로 전국 평균 참여율인 52.8%를 상회하였다. 2008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1,099억 원(시·도교육청 630억 원, 시·군 469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었다(청소년백서, 2009: 290).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¹²⁾제도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워 계층 간 교육격차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12) 바우처(Voucher)제도: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이다.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¹³⁾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 학생, 기타 학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학생은 연간 30만원 내외에서 자유 수강을 할 수 있다.

2006년에 2개월 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약 9만 명에게 바우처제도가 시범 운영된 후 2007년에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월 평균 27만 명에게 자유수강권이 지원되었다. 2008년에는 1,015억 원(시·도교육청 1,009억 원, 국고 6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약 32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게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보호·지도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에서는 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초등보육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초등보육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된다.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들이 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소질개발, 인성지도 등을 실시하며, 교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2008년 초등보육교실에 지원된 재정은 875억 원(시·도교육청 593억 원, 시·군·구 282억 원)이다.

대학생 멘토링(Mentoring)¹⁴⁾은 소외계층 초·중·고등학생(Mentee)들을 대학생(Mentor)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학생에 대한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3)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즉 탈북자를 말한다. 통일부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14) 멘토링(Mentoring):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조언자, 상담자, 후원자를 멘토(Mentor)라 하고, 멘토의 활동을 멘토링이라고 한다.

대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멘토활동비는 횟수,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급하며, 대학교 연계하여 봉사학점 등을 인정한다.

<표 4-9> 2008년 대학생 멘토링 현황

(단위: 개, 명, 원)

운영학교 수	멘티	멘토	시간 당 활동비
2,110	38,461	11,427	13,986

출처: 청소년백서(2009), p. 292.

시·도교육청은 일반 멘토링과 귀향 멘토링을 실시한다. 귀향 멘토링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 중 고향을 방문하여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를 구하기 쉽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실시된다.

2. 방과 후 학교 재정영역의 문제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입소순위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줄 경우 차 상위계층의 아동들과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상황 된다. 방과 후 학교의 재정지원은 각 기관의 주체와 관할 정부기관 및 지자체마다 서로 상이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가족지원의 맥락에서 보면 재정지원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부족과 낮은 보육료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결핍돌이 되어 학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농산어촌의 아동들이 도시지역의 아동들보다 다양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시행정의 일각일 뿐이다. 모든 보호받아야 할 아동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방과 후 학교 재정영역의 개선방안

1) 지원대상의 개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입소순위의 결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누구나’로 확대하여 보편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대상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농산어촌과 대도시와 같은 지역간의 차별과 대도시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과는 괴리가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선정기준의 완화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가족과 사회의 공동영역임을 상기할 때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원의 조정과 마련,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관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방과 후 학교 지원의 강화

국공립 방과 후 학교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분담하고 있으나 개인이 주체로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육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재정지원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공립 방과 후 학교시설의 경우 교사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국고보조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수지를 민간에 떠넘기게 되면 이용자의 보육료부담에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에 민간보육시설의 일부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방과 후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시설을 신축해야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평가를 선별하는 기준의 마련 또한 요구된다.

제4절 전달영역

전달영역은 방과 후 학교정책의 주무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내용과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1. 방과 후 학교의 전달체계

우리나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3개 중앙정부의 5개 사업으로 대상자의 연령대가 중복이 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본질은 서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교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소관부처가 다르지만 그 내용면에서 차별성이 없고, 그 내용 또한 중복되고 있다.

2. 방과 후 학교 전달영역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설치에 관해서 법적인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방과 후 학교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정부기관과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각 기관마다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기관·학교마다 서로 다른 여건 속에 운영되고 있다.

통일되지 않은 운영지침은 지역·학교별로 교사의 채용과 근무여건이 다르고, 이는 교사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법령이나 보육지침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즉, 과중한 방과 후 학교의 업무는 분담을 하여도 책임져야 할 업무는 많을 수밖에 없다.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수강료를 10% 더 건어서 전담인력을 채용하는데.. 아이들의 한 달 수강료는 3만원 미만으로 학생 1명당 전담인력 채용할 수 있는 돈은 3,000원으로 100명이 수강해야 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은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분산하고, 방과 후 학교 보조 인력을 채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방과 후 학교 전달영역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방과 후 학교의 업무에 대하여 지시 감독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등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계의 법령이나 지침 등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입안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실무를 체험하는 계기를 통해 마인드를 바꿔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보육시설, 청소년아카데미, 공부방 등의 기관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2) 정책의 일관성제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복지, 교육, 취미와 같은 영역의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을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전달체계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구심점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업무의

수행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5개 사업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방과 후 학교의 관리 및 제반 운영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전담행정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수업이후에 이뤄지는 학령기아동의 보호와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료나 실비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복지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표 4-10> 본 연구의 영역별 정책평가 개선방안

구 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할당영역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대상의 중복.	통합된 단일화 법안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제공.
대책영역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프로그램의 중복. 프로그램전문 강사 부재.	각 부처의 공조강화. 프로그램전문 강사 양성 및 처우개선.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재정영역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금 부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 기관마다 상이한 재정지원.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 민간시설의 지원강화. 민간시설의 국공립전환.
전달체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법적 근거 부재. 통일되지 않은 운영지침.	통합된 단일화 법안마련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 분담. 정책의 일관성제고.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과 후 학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화되어있는 방과 후 학교와 적용대상, 주관부처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스웨덴과 미국은 교육법에 근거하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어 다원화형태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적용되는 기준 등으로 효율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안의 마련을 통해 전담정부기관과 명칭의 통합, 적용대상의 일관성확보 등이 요구된다.

둘째,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령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복지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선진외국의 경우 적용대상의 기준이 스웨덴(12세), 독일(14세), 미국(18세), 일본(12세)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모두 학령기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과 후 교실(만6~8세), 방과 후 학교(만6~17세)까지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의 양성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원화되어 있는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매뉴얼 보급, 양질의 교사를 확보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 복

지와 교육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와 지역사회, 부모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방과 후 활동자원의 발굴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방과 후 학교의 대상은 만6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연령대에 맞는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전담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한 전담교사의 인력확보에 가장 어려운 요인을 사회적으로 인식의 부족한 점과 처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보육교실, 청소년아카데미, 공부방 등의 기관간의 연계성을 높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수행 시 보다 발전된 방과 후 학교의 모습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방과 후 학교는 보편적 서비스를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요보호대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끝으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방과 후 학교시설의 확충과 충분한 재정지원을 위한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군·구별 방과 후 아동의 실태조사와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계에 의한 읍·면·동단위에 방과 후 보호와 교육, 취미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 후 학교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공계순(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류현수, 이정숙(2007), 『방과 후 아동지도론』, 서울: 통문사.
- 보건복지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
- 서영숙외 2명(2001), 『방과후 아동지도론』, 서울: 양서원.
- 여성가족부(2007), 『선진 유럽 보육정책 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 유공순(2007), 『사회복지개론』, 서울: 양서원.
- 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 백서』, 서울: 청소년위원회.
- 황진수(2003),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_____(2007),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학술지)

- 김명숙, 정영숙(2005),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아동의 적응”, 한국영유아 보육학 9집.
- 김수동(2006), “외국의 방과 후 교육활동운영 사례”, 경기교육 170호.
- 김재인(2000), “방과 후 아동보육의 실태 분석과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류방란(200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내 보육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숙(2005), “저 출산 시대의 통합적 자녀양육과 방과 후 보육”,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 서울시교육청(2006), “학교혁신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격차해소 방안”, 서울시교육청.
- 윤혜순(2009), “지역아동센터의 효과분석을 위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제7권 제4호.
- 이문숙, 이소은(2007), “방과 후 교실 이용에 따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아

(정부문서)

서영숙(2006), “방과 후 활동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학위논문)

김돈희(2007), “방과 후 학교 공부방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귀남(2007),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원(2006),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서비스 이용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숙(1999),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의 실태와 의견조사 분석”,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주(2003),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아동지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숙(2007), “한국 방과 후 아동지도의 활성화 방안”, 서울스포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민환(2009), “방과 후 아동보육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현경(2007),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금숙(2007), “방과 후 교실의 독서프로그램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민(2007),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숙(2008), “방과 후 아동보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순(1999), “방과 후 아동지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

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재(1998),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주(2004),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Gilbert, N. & Specht, H.,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3. 인터넷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oe.go.kr/main.jsp>

국가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방과 후 학교 <http://afterschool.edunet4u.net/as/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지역아동정보센터 <http://www.icareinfo.info/>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After-School Policy in the Elementary School

Kwon, Jung-Sook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Even the initial responsibility of breeding up the children under school age after school lies on their parents, it is the role of modern country to set up policy and provide service for them under th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reality of self-protection for primary students has been estimated around 24~33% in the early 1990, and around 35~40% of children in dual-income family are faced to spend 3~7 hours alone without parents' protection after school (Park, Yoonjoo, 2003: 10), 70% of elementary students are attending private institute after school according to the survey for reality of national child-care and education of 2004 (2005).

Currently various types of child program after school are

implementing through many institutions such as 'After Schoo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MEST), 'Teenagers Academy'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GEF), 'Community Child Center', 'Care-Facility for baby and infant (House of Child-care)'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W), and those are categorized into a public subsidy facility, and a civil care-facility based on the financial support. Implementation without integrated related regulations nor supervising authority is not only systematic, but also lack of consistenc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imilar programs in various standards, and bringing lots of confusion in choice to the beneficiary.

After School may mean various terms in mix such as Educational Activity After School, After School Class, After School Program, After School Care, After School Guidance, After School Service, After School Child Protection, and After School Child Nurturing Support, I have used unified terminology of 'After School' in this study. The method of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study of documentary records selected from the various statistical data, publication, research reports, and preceding scientific treatise of government, as I have chosen documentary access.

In Chapter 1 Introduction, I have presented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2, I have presented the concept, legal ground of After School, In Chapter 3, I have composed the model of criteria for policy evalua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ways of program operation of After School in foreign counties, and thereby suggestions to our country.

In Chapter 4, I have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oint at

issue of policy for After School in elementary school using matrix of analysis of Gilbert and Specht. In Chapter 5 Conclusion, I have presented the ways of improvement on After School policy in the elementary school in our country. 1st, preparation of independent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After School is necessary. Second, as the care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fter School policy rather than the educational approach, it is most appropriate that the MW will undertake the charg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programs targeting mainly beneficiary and cultivation of excellent teachers. 4th, the connectivity among the After School, Community Child-Care Center, After School Care Class, Teenagers Academy, and Study Room in the community with the authority should be increased. 5th, univers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the children under school age and teenagers. 6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fter School facility with consideration of the peculiarity of the district and to secure financial support as well.

